

[p.7]

**제4절.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**

- 공시제한의 원칙 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를 가림
- 공시제한하지 않는 예외
  - . 알거나 알 수 있음이 명백 : 인감카드 이용, 전자증명서(단,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(일반 USB)는 제외) 이용, 직접 주민번호 입력
  - . 공공의 필요성 : 공용목적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재판상 목적 → 신청인이 신청목적과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한 입원 등에 한함
  - . 기술적 어려움 :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것<삭제됨>
- [\*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(일반 USB)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]
-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 (특례 신설 2022.08.05)
  - . '종류주식의 내용란, 기타사항란, 전환사채란, 신주인수권부사채란, 이익참가부사채란,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, 주식배수선택권란 등(이하 "종류주식의 내용란 등")에 확오로 주식인수인, 주주, 채권자 등(이하 "주식인수인 등")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 주식인수인 등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는 관할등기소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. 등기소장(등기국·과장, 사무과장을 포함)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할 사항인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직권으로 범원행정처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. 위 등기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를 전부 가리고(예 : \*\*\*\*\* - \*\*\*\*\*)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한다.
- 종이 폐쇄등기부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경우
  - . 과거에는 공시제한 하지 않았으나, 공시제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(따라서, 예외적인 경우 외에 주민등록 뒷번호 가려서 공시). 다만, 그 수가 과다하거나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는 등 공시제한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p.8]

**III.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**

-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(단,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(일반 USB)는 제외)에 의한 신청
  - . '인감카드 & 비밀번호', '전자증명서(단,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(일반 USB)는 제외) &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' 제시
  - .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같음. 별도의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면 불요
- 무인발급기 : 가능
- 인터넷 이용 : 발급은 아니고, 발급예약 후 등기소에서 교부 청구 가능

[p.9] 내용 수정 부분은 밑줄 표시 / 그림은 표로 교체

#### IV.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

- 전자증명서(보안토른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는 제외)에 전자서명기능과 별도로 인감카드 발급기능이 들어 있음
- 전자증명서(보안토른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는 제외)의 전자서명 기능이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되더라도 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한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[\* 「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제8조 제1항 단서의 보안토른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]

구분	명칭	특징
	인감카드	
	HSM USB <보안토른 기능이 있는 전자증명서>	. 전자서명기능 . 인감증명서 발급기능 있음
	일반 USB <보안토른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>	. 전자서명기능 . 인감증명서 발급기능 없음

[p.19]

#### 2. 전자증명서

- 회사의 대표자와 같이 동기 당사자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필요
- 인증서와 유사하나, 인증서의 기능 & 전자서명 당시의 해당 법인의 존재, 상호, 본점, 대표권 등의 변경 여부도 증명
- 보안토른 기능이 있는 전자증명서(HSM USB) : 전자서명기능(전자신청용) & 인감발급기능  
↔ 보안토른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(일반 USB) : 전자서명기능(전자신청용) 만 있음

[p.20]

- 등록정보의 변경
  - 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변경 : 출석 변경
  - . 그 외 변경(인증서 변경, 사용자등록번호, 주소 등) :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
- 유효기간 : 3년 -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가능(전자신청 가능; 일반 USB는 전자신청으로 연장 불가)
- 해지 등
  - . 효력정지, 효력회복 또는 해지의 신청이 가능
  - . 사용자등록번호 5회 연속 오류 입력 : 직권으로 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
  - . 효력정지 및 해지 신청 : 출석 또는 전자
  - . 효력회복 : 등기소 방문신청 - 인감증명서는 첨부 불요
  - . 사용자등록번호 분실 : 기존 사용자등록번호 해지 후 새로이 사용자등록 필요

#### 2. 전자증명서 발급

- 전자증명서의 용도 : 등기신청(부동산,법인등기)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용도(현재 전자공탁, 전자화정일자)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.
- 전자증명서 발급 청구할 수 있는 사람 :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에 한함
- 전자증명서 발급 제한 :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자 + 같은 자격으로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
- 전자증명서 발급 청구
  - . 본인 또는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(관할은 제한 없음)
  - .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신청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
- 전자증명서의 발급
  - . 휴대용 저장매체인 HSM USB에 저장하여 발급.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토른 기능이 없는 USB(일반 USB)로 발급할 수 있음.
  - . 기록된 내용 : 인감제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자격, 상호(명칭), 법인등록번호, 증명기간(3년), 일련번호, 전자서명검증정보, 전자서명의 방식
  - . 전자증명서 비밀번호(6~8개 아라비아숫자)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(6개 아라비아숫자)를 신청인(또는 대리인)이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게 함. 다만 보안토른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아라비아숫자, 로마자 및 특수문자로 구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
- . 변경발급 :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의 기록 내용이 달라지는 변경 등기 후에는 변경발급 받아야 함.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가능
- . 갱신발급 :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갱신발급 가능.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가능.
- . 분실/훼손시 : 기존 전자증명서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(방문)에 의하여 다시 발급
- . 보안토론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(일반 USB)의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변경/갱신 발급이 불가함.

### 제3편.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

#### 제1장. 주식회사의 등기

##### 제1절. 총설

###### 1. 주식관련

###### (1) 액면주식 vs. 무액면주식

- 정관 및 등기기록에 '1주의 금액'이 기재된 주식을 액면주식이라 함.
- '1주의 금액'이 없는 주식을 무액면주식이라 함. 무액면 주식 발행시에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발행 당시 결의기관(예. 신주발행시 이사회)이 정하여 주어야 함
- 회사는 발행주식 전부액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여야 함(섞어서 발행불가)
-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시에 자본금은 변경할 수 없음.

###### (2) 종류주식

-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, 상환/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주식을 종류주식이라 함.
-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,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별로 발행가능한 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함.
- 종류주주총회
  - . 전제가 되는 주총/이사회 결의 내용이 해당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별도로 필요한 종류주주총회(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제가 되는 주총/이사회의 결의 내용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데에 그칠 뿐이고, 전제가 되는 주총/이사회 결의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허자가 없음)
  - .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'출석한 종류주식의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'로써 하여야 함.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도의 결권을 가진.

###### 2. 의사결정 구조

~~(중략)~~

###### 3. 정관

4. 공중(공중인의 인증)의 필요성

- 미결제 타점권(타행수표로 입금) 기재된 참고증명서 관련
  - :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인터넷으로 발급한 참고증명서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한 참고증명서도 유효함(2021년 선례)

2. 의사결정

- (1) 업무집행
  - 이사 과반수 결의에 의함 (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음)
  - 통상의 업무집행, 지배인 선임/해임
- (2) 사원총회 (\* 만능기관임)
  - 법령에 의하여 제외된 것이 아닌 한 회사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.
  - [2022년, 관련선례]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,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.

6. 해산 및 회사계속 : 합병회사와 다른 점

- 해산사유 中 :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(1방과 남은 때)
- 위 경우, 회사계속
  - . 가능 : 잔존하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'전원의 동의' 필요
    - 일부 동의 및 부동의 사원 퇴사로 볼 수 없는가? 불가함(선례)

1. 절차 개시

- 이해관계인의 신청

[↔ 특칙 공식 : 검사 청구 사건 : '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'라고 표현됨(검사 단독은 없음)]

<p>* {두문자} 검사(는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소 폐쇄명령(를 하고)</li> <li>- 회사 해산명령(을 할 때), 청산인 선임(을) 1명(도)/없게/명령(한다)</li> <li>- (그러나), 법인(에 대하여는) 보충(적으로), 특/임/청산인(을) 선임/해(준다)</li> </ul> <p>① [회사사건] 회사의 해산명령 사건</p> <p>② [회사사건]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사건 중 일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산명령 시</li> <li>- 합병, 합자회사 : 사원 1인(1인)이 된 때의 해산</li> <li>- 유한책임회사 : 사원이 없게 된 때의 해산</li> </ul> <p>③ [회사사건]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명령 사건</p> <p>④ [법인사건] 파단법인의 정관보충 사건</p> <p>⑤ [법인사건]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사건</p> <p>⑥ [법인사건]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사건</p>
--

[↔ 특칙 공식 : 법원 직권 개시 사건]

<p>* {두문자} 법원(은) 직권(으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소 폐쇄명령(에는) 관심(없고)</li> <li>- 회사 해산명령(을 할 때), 청산인 선임(을) 1명(도)/없게/명령(한다)</li> <li>- (한편), 법인(에 대하여는) 해산/청산(을 전부) 감독(하고)</li> <li>- 신탁(에 대하여는) 필수적(으로) 신탁관리인(을) 감독(한다)</li> <li>- (그 결과 잘못이 있으면) 과태료(를 부과한다)</li> </ul> <p>① [법인사건] 법인의 해산/청산의 감독사건</p> <p>② [법인사건] 법인의 청산인의 선임/해임사건</p> <p>③ [법인사건] 청산 중 법인의 감정인 선임사건</p> <p>④ [회사사건] 회사 해산명령 사건(↔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아닐에 주의)</p> <p>⑤ [회사사건] 회사 청산인 선임사건 중 일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산명령 시</li> <li>- 합병, 합자회사 : 사원 1인(1인)이 된 때의 해산</li> <li>- 유한책임회사 : 사원이 없게 된 때의 해산</li> </ul> <p>⑥ [신탁사건]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</p> <p>⑦ [신탁사건] 신탁관리인 선임/해임</p> <p>⑧ [신탁사건] 신탁사무의 감독 및 감사인의 선임</p> <p>⑨ [과태료] 과태료 사건</p>
---

**1. 청산인 선임**

- (1)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(\* 신청인 관련 : 검사청구/법원직권 두문자)
  - 1)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선임  
: 청산인이 없게 되는 경우, 설립무효·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
  - 2) 이해관계인 신청 + 검사청구 + 법원직권
    -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시
    - 합병/합자회사 : 사원이 1인이 된 때(합병) / 1방만 남게 된 때(합자: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)의 해산
    - 유한책임회사 : 사원이 없게 된 때의 해산